

kiri Weekly

2013.9.9 제250호

이슈

우리나라 연금과세 체계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포커스

8.28 전·월세 대책 평가와 진단

글로벌 이슈

일본 소비세 인상의 시사점

신흥국 제조업 경기 동향의 특징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김세환 부장 / 02-3775-9051)



우리나라 연금과세 체계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강성호 연구위원, 정원석 연구위원

요약

- 최근 정부의 조세정책 개편 방향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연금과세 체계에 영향을 미쳐 사적연금의 가입과 유지 행태에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연금저축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 적용으로 저소득층은 보험료 부담이 감소하고, 고소득층은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득계층별로 가입 및 유지 행태가 변할 수 있음.

- 2013년 세제 개편 과정에서 사적연금보험료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제혜택 변화 효과를 소득수준별로 살펴본 결과,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소득구간을 기점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제혜택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할수록 세제혜택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연금세제 개편 후 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이 10.5% 만큼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됨.
 - 소득계층별로 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 변화를 보면 3천만 원 이하 및 3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집단에서는 각각 152.1%, 63.5% 만큼 세제혜택이 증가한 반면,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및 3억 원 초과 집단에서는 각각 40.2%, 58.7% 만큼 세제혜택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과세 형평성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
 - 연금유형별로 보면 공적연금은 소득공제방식을 유지하여 세제혜택의 변화가 없지만 퇴직연금은 29,000원, 개인연금은 32,000원 정도 세제혜택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어, 개인연금의 가입 및 유지에는 다소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됨.

- 2013년 연금세제 개편 효과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금세제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연금세제 개편 시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도입된 연금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입구 및 출구세제의 일관성을 염두에 둔 연금세제 개편이 필요함.
 - 저소득층에게는 세제 개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고소득층에게는 세제 개편에 맞는 효과적인 연금상품 개발이 요구됨.
 - 일시금보다 연금 형태로 수급하여 노후소득보장 기능에 충실하도록 추가적인 연금세제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 검토배경



- 최근의 조세정책 개편 방향은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복지재원 마련과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이러한 세제 개편은 사적연금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을 조세 부담 수준의 적정화, 조세구조의 정상화, 조세지원의 효율화로 설정하여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 이 중 조세지원의 효율화는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되며 연금과세 체계의 변화를 초래하는 세제 개편임.
- 연금세제 개편은 그동안 소득공제 방식으로 운영되던 사적연금과세 체계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가입 및 수급 상황에 변화를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연간 5,500만 원 이상 소득자들은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추가적 세금 부담은 연금시장에서도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 즉, 세액공제 방식으로의 전환은 일반적으로 개인연금 보험료 부담의 증가를 가져와 가입유인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제 개편에 따라 연금시장에 발생하게 될 공제수준 변화 효과를 소득계층별로 분석하고, 해외의 연금세제 현황 파악을 통해 우리나라 연금세제 개편방향을 살펴보고자 함.

2. 우리나라 연금과세 체계¹⁾와 세제 개편 내용



가. 연금과세 체계 특징 및 내용

- 연금과세는 보험료 비과세(공제), 연금소득 과세 형태를 띠고 있으나, 연금수령 시에도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어 연금과세 체계는 혼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급 시 연간 1,200만 원 이하 연금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 혹은 분리소득 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함.
- 2000년 세제 개편 전까지 공사 연금과세 체계는 분리되어 서로 다른 체계로 운영되었으나, 세제 개편을 통해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연금급여에 대한 과세’ 체계로 전환(TEE→EET)함으로써 공사연금 동일 과세 체계가 됨.
 - 일반적으로 연금소득 과세 체계는 보험료 납입 시 소득공제(Exempt), 운용단계 수익 비과세(Exempt), 연금수령 시 과세(Tax)하는 EET 방식이 일반적인 추세임.²⁾
 - 사적연금은 2001년, 공적연금은 2002년부터 연금수령 시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공사연금은 원칙적으로 EET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나 EET 방식은 공적연금에는 온전히 적용되지만 사적연금에는 TEE와 EET 방식이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음.
 - 공적연금은 본인부담 보험료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 되나 사적연금은 공제한도 400만 원(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본인부담분의 합산액) 이상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비공제됨.³⁾
 - 또한 사적연금 중 EET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세제적격 개인연금에 한정되며, 비적격 연금형태인 변액연금과 즉시연금은 TEE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1) 동 내용은 2013년 세제 개편 이전까지 적용되는 현행 우리나라 연금과세 체계를 정리함(2013년 8월 현재 조세제도 개편 중에 있음).
 2)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덴마크, 스위스 등은 EET 방식이고, 스웨덴, 일본, 호주 등은 운용단계에서 부분적 과세가 추가되는 ETT 방식의 과세 체계임.
 3) 비공제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에서 비과세됨. 단, 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 소득공제 환급(해지금액의 22%), 해지가산세(불입누계액의 2%) 부담함.

〈표 1〉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변천 내용

구분			소득공제 내용		
			2000. 12. 31 이전	2001년	2002년 이후
공적연금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공제 불인정	본인 부담액의 50%	본인 부담액의 100%
		지역가입자	연간 불입액의 40% (한도 72만 원)		
		임의가입자	공제 불인정		
	특수지역 연금	공제 불인정			
퇴직연금	법정 퇴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 ¹⁾		2006. 1. 1 이후 최초로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005. 12. 1 이후 납입분부터 공제) 본인부담액 전액 (2013년 현재 연금저축 불입액과 합산하여 400만 원 한도)		
개인연금	국내거주자		연간 불입금액 중 2000년까지는 40%(한도 72만 원), 2001년 이후는 100%(한도 240만 원), 2013년 현재 연금저축 불입액과 합산하여 400만 원 한도		

주: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근로자가 추가 불입하는 부담금을 말함.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연말정산 안내)를 참고하여 저자가 보완함.

■ 연금수령 시에는 납부 시(소득공제만 존재)와 달리 소득공제와 소득과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특징이 있음.

- 연금수령 시 적용되는 연금소득 공제수준은 총연금액 기준으로 350만 원 이하는 100%, 35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는 40%, 7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이하는 20%, 1,400만 원 초과 연금액에 대해서는 10%가 공제되며, 공제액 한도는 900만 원임.⁴⁾
-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 때 공적연금소득을 제외한 사적연금 연금소득(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합산 금액)이 1,200만 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 과세됨.
 - 공적연금은 지급기관에서 매월 연금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소득세법 제143조의2 제1항) 후 연말정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됨(소득세법 제143조의4).
 - 사적연금은 지급기관에서 매월 연금지급 시 수급연령, 퇴직연금, 종신연금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 후(소득세법 제129조제1항5의2) 종합소득 과세 대상여부에 따라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 과세됨.

■ 연간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⁵⁾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 과세 혹은 퇴직·기타소득 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선택 과세 체계에 따라 과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

- 분리과세되는 사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수급연령, 퇴직연금, 종신연금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됨.
- 따라서, 사적연금소득은 수급연령에 따라 3~5%(55세~70세 미만 5%, 70세~80세 미만 4%, 80

4) 소득세법,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제1항.

5) 2012년 소득세법 개정에 의해 공적연금은 대상에서 제외됨(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

세 이상 3%), 퇴직연금일 경우 3%, 종신형 연금소득일 경우 4%의 세율이 적용되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는 낮은 세율을 적용함(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의2호).

나. 2013년 연금세제 주요 개편 내용 및 평가

■ 2013년 연금세제 개편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 사적연금보험료 공제 방식을 소득 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이고, 둘째, 연금계좌에서 사용한 노후의료비 지출에 대해서는 연금수령으로 인정하며, 셋째, 일시금에 대한 세 부담 완화 조치임.

- 연금세제 개편 과정에서 공적연금보험료는 현행과 동일하게 소득공제 방식을 유지하고, 사적연금보험료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되 공제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연 400만 원으로 하고 세액공제율을 모든 가입자에게 12%로 적용함.
-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기본 20%, 부득이한 경우 15% 세율)⁶⁾으로 과세 하던 것을 노령자가 의료목적으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인정하여 3~5% 원천징수함.⁷⁾
- 연금 외 수령 소득(일시금)에 대해 일반적인 경우 20%,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15%의 기타소득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 각각 15%, 12%로 인하함.⁸⁾

■ 2013년 연금세제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세액공제 방식으로의 전환은 세제적격 개인연금(연금저축)의 가입 및 유지 행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연금저축 보험료의 12%를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공제하므로 소득공제 방식에 의해 12% 이상 적용받던 가입자(고소득층)는 가입과 유지에 불리하고, 그 이하에서 적용받던 가입자(저소득층)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고소득층은 신규가입 유인이 줄어들고 납부금액도 낮추게 될 것이며, 저소득층은 반대의 행태를 보일 수 있음.
-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노후의료비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연금세제 개편은 노후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음.

6)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제3항.

7) 기획재정부(2013. 8), 「2013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p. 46.

8) 2012년까지 퇴직일시금 수령 시 전부(퇴직금, 자기불입금, 운용수익) 퇴직소득 과세였으나, 2013년 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이를 구분하고 있음(개정 소득세법안, 제129조제1항).

- 일시금에 대한 적용세율을 경감하는 연금세제 개편은 일시금 수령 소득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세 부담 완화 조치로서의 의의는 존재하나, 연금보다 일시금을 선호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일시금 선호를 부추길 우려도 존재함.

3. 우리나라 연금과세 현황 및 연금세제 개편 효과



가. 연금과세 현황

- 국세통계연보(2012)를 활용하여 연금유형별 소득공제 대상자 중 가입자 규모와 비중을 살펴보면, 공적연금(13,583,000명), 퇴직연금(29,000명)⁹⁾, 개인연금(3,247,000명)은 각각 80.6%, 0.2%, 19.3%로 나타났다.
- 연금유형별 1인당 보험료 연간 평균공제금액은 공적연금 1,331,000원, 퇴직연금 2,030,000원, 개인연금 2,256,000원으로 개인연금 보험료 공제수준이 가장 높았음.
- 이는 개인연금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적연금에 비해 고소득자 중심으로 가입하고 있어 소득공제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이 크기 때문임.

〈표 2〉 연금유형별 1인당 보험료 불입액 및 대상자 규모

(단위: 천 원, 천 명)

소득자 유형	연금유형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금액	대상자 수	금액	대상자 수	금액	대상자 수
종합소득자		1,492	2,408 (77.5)	2,367	3.45 (0.1)	2,470	694 (22.4)
근로 소득자	과세대상자	1,442	9,234 (78.8)	2,044	23.22 (0.2)	2,223	2,459 (21.0)
	과세미달자	606	1,941 (95.3)	1,377	2.27 (0.1)	1,539	93 (4.6)
전체		1,331	13,583 (80.6)	2,030	28.94 (0.2)	2,256	3,247 (19.3)

주: 1) 국세통계연보(2012)를 활용하여 저자가 산출함.

2) 국세통계연보에서는 종합소득자와 근로소득자의 일부가 중복될 수 있어 전체 통계치는 중복성이 존재하는 값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과세표준소득 기준으로 공적연금은 3천만 원 이하, 퇴직연금은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개인연금은 3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에서 가장 많이 가입하나 소득수준에 따라 불입액과 비중에 차이가 있음.

9) 이하 퇴직연금은 가입자 본인부담분(소득공제대상분)이 존재하는 자만 대상으로 분석됨.

〈표 3〉 과세표준소득 규모별 1인당 보험료 불입액 및 대상자

(단위: 천 원, 천 명, %)

과세표준소득 구간	연금유형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금액	대상자 수	금액	대상자 수	금액	대상자 수
0원		1,112	462 (3.4)	2,312	0.35 (1.2)	2,269	85 (2.6)
3천만 원 이하		801	7,664 (56.4)	1,421	7.36 (25.4)	1,888	617 (19.0)
3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1,903	3,668 (27.0)	1,975	8.24 (28.5)	2,192	1,146 (35.3)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2,497	1,339 (9.9)	2,271	8.85 (30.6)	2,425	977 (30.1)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2,440	415 (3.1)	2,669	3.99 (13.8)	2,555	395 (12.2)
3억 원 초과		2,640	34 (0.3)	3,181	0.16 (0.5)	2,850	27 (0.8)
합계		1,331	13,583 (100.0)	2,030	28.94 (100.0)	2,256	3,247 (100.0)

주: 1) 국세통계연보(2012)를 활용하여 저자가 산출함.

2) () 안은 유형별 대상자 비율임.

-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6천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개인연금 불입액이 다른 연금에 비해 높고, 1억 원 초과 소득수준에서는 퇴직연금 불입액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나. 연금세제 개편 효과

■ 2013년 연금세제 개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보험료 불입액, 유효세율, 보험료공제율을 활용하여 연금 유형별 및 소득수준별로 사적연금보험료의 세제혜택 변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함.

- 보험료 불입액과 유효세율은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 각각에 대해 2011년 기준으로 연금유형별, 소득구간별로 산출할 수 있으며, 유효세율은 결정세액/과세표준액으로 산출함.
- 2013년 세법 개편에 따른 사적연금보험료 공제율은 12%로 제안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
- 연금유형별 및 소득수준별 사적연금보험료의 세제혜택 변화 효과는 세제 개편 전후 조세감면액의 차이로 산출할 수 있음.
 - 보험료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감면액은 보험료 불입액에 유효세율을 곱하고,¹⁰⁾ 보험료 세액공제에 따른 조세감면액은 보험료 불입액에 보험료공제율(12%)을 곱하여 산출함.

10) 분석방법은 국회예산정책처(2012),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p. 74에서 참고함. 이때 유효세율로 산출하는 이유는 한계세율 방식의 경우 소득공제 받는 소득원의 적용 순서에 따라 세제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평균세율을 적용하는 유효세율을 활용함.

- 소득공제 방식 조세감면액 = 소득구간별 보험료 공제대상 불입액 × 유효세율
- 세액공제 방식 조세감면액 = 소득구간별 보험료 공제대상 불입액 × 보험료공제율(12%)
- ※ 유효세율 = 결정세액 / 과세표준액

■ 보험료 소득공제(현행 방식)에 따른 조세감면액 산출과 관련하여 보험료 불입액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출되어 있으므로 유효세율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음.

- 소득자유형별 유효세율(2011년 기준)을 살펴보면, 종합소득자 18.0%, 근로소득자 11.0%로 나타나 종합소득자가 약 7.0%p 높게 나타나고 전체 유효세율은 13.4%로 산출됨.
- 소득수준별로 구분하면, 전체 기준으로 ‘3천만 원 이하’는 4.8%, ‘3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는 7.3%,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12.0%,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20.1%, ‘3억 원 초과’는 29.0%로 나타나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누진적 세율구조를 보임.
 - 소득자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3억 원 이하의 소득구간에서는 종합소득자가 근로소득자에 비해 모든 구간에서 유효세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동일 소득구간에서도 근로소득자에 비해 종합소득자의 평균소득이 높기 때문임.

<표 4> 소득자유형별 유효세율 (2011년 기준)

(단위: 천 원, %, 천 명)

과세표준소득 구간	종합소득자			근로소득자			전체		
	평균 소득	유효 세율	대상자 수	평균 소득	유효 세율	대상자 수	평균 소득	유효 세율	대상자 수
3천만 원 이하	7,508	6.8	2,498	4,236	2.9	4,865	5,371	4.8	7,362
3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42,482	11.6	301	15,465	6.3	3,379	17,676	7.3	3,680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76,416	15.6	135	37,728	11.3	1,314	41,340	12.0	1,449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159,621	22.4	112	88,545	18.7	344	106,050	20.1	457
3억 원 초과	796,982	28.6	29	526,995	30.1	16	700,160	29.0	46
합계	26,532	18.0	3,076	16,290	11.0	9,918	18,767	13.4	12,994

주: 1) 국세통계연보(2012)를 활용하여 저자가 산출함.
2) 평균소득은 1인당 평균과세표준액을 의미함.

■ 2013년 연금세제 개편 효과에 따라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소득구간을 기점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조세감면 효과가 줄어들어 세액공제가 불리하고, 소득이 감소할수록 조세감면 효과가 증가하여 세액공제가 유리할 것으로 추정됨.

〈표 5〉 과세표준소득 규모별 1인당 보험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 조세감면 효과

(단위: 천 원, %)

연금유형 과세표준소득 구간	소득공제 시 효과(A)		세액공제 시 효과(B)		차이(B-A)	
	퇴직 연금	개인 연금	퇴직 연금	개인 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천만 원 이하	68	90	171	227	103 (152.1)	137 (152.1)
3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145	161	237	263	92 (63.5)	102 (63.5)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273	291	273	291	0 (0.0)	0 (0.0)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535	513	320	307	-215 (-40.2)	-206 (-40.2)
3억 원 초과	924	827	382	342	-542 (-58.7)	-486 (-58.7)
합계	272	302	244	271	-29 (-10.5)	-32 (-10.5)

주: 1) 국세통계연보(2012)를 활용하여 저자가 산출함.

2) () 안은 $(B-A)/A \times 100$ 으로 산출함.

- 모든 연금유형에서 1억 원 초과 소득자는 세제감면 효과가 줄어들며,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소득구간에서는 평균적으로 차이가 없고, 6천만 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세액공제로 인해 소득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세제 개편 효과를 세액공제 시 조세감면액과 소득공제 시 조세감면액의 차액 대비 소득공제 시 조세감면액의 비율(세제혜택 변화 효과)의 비율로 설명하면, 3천만 원 이하는 152.1%, 3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는 63.5%,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0%,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40.2%, 3억 원 초과는 -58.7%로 나타나 전체적으로는 10.5%만큼 세제혜택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 연금유형별로 보면, 세제 개편 후 공적연금은 소득공제방식을 유지하여 세제혜택의 변화가 없지만 퇴직연금은 29,000원, 개인연금은 32,000원 정도 공제에 따른 소득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어, 개인연금의 가입 및 유지에 부정적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결과를 두고 볼 때, 세제 개편에 따라 사적연금 가입 및 유지 확률이 감소할 수 있으나, 중산층 이하에서는 가입 및 유지 유인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중산층 이하 집단에 대해서는 세제변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할 필요가 있고,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변화된 세제에 맞는 효과적인 연금상품 개발이 요구됨.

4. 해외 연금세제 개요



■ 공적연금의 경우 영국, 미국, 아일랜드, 노르웨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형식으로 보험료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고 있음.

- OECD 주요국은 공적연금 보험료에 대해 상대적으로 세액공제 방식보다 주로 소득공제 방식으로 세제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공적연금 보험료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공제를 시행하고 있음.
- 스웨덴의 경우는 세액공제 방식(세액공제율 100%)으로 세제지원을 하고 있음.
- 영국, 미국,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은 공적연금 보험료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노르웨이는 일정소득 이하의 개인에게는 보험료를 받고 있지 않음.
- 반면, 호주의 경우 일반재정으로 공적연금제도가 운용되므로 세제혜택 또한 존재하지 않음.

〈표 6〉 OECD 주요국의 연금 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 요약

공적연금		사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세(비공제)
기여	소득공제	한국, 덴마크, 핀란드, 스위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	-	-
	세액공제	스웨덴	-	-	-
	과세(비공제)	영국, 미국, 아일랜드	-	-	노르웨이
無기여			호주	-	-

자료: 강성호(2013), 『연금과세에 따른 실질 연금소득보장과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에서 재구성함.

■ 사적연금의 경우 OECD 주요국의 대부분이 소득공제 방식을 취하고 있고 세액공제 방식은 존재하지 않거나 보험료 공제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음.

- 현재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조세회피 및 세제지원의 지나친 역진성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공제 한도를 두고 사적연금 보험료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음(제한적 소득공제 방식).
 - 특히 노르웨이의 경우 세율 28%의 지방정부 소득세에 대해서는 사적연금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나 중앙정부의 소득세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허용하지 않음.

5. 우리나라 연금세제 개편 방향



- 연금세제 개편으로 사회적 형평성은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연금시장의 위축도 예견되는 바, 제도 도입 취지¹¹⁾를 고려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고, 입구 및 출구세제의 일관성을 염두에 둔 추가적인 연금세제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공적이든 사적이든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 방식 보다 소득공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금세제 개편은 연금제도의 도입 이유와 성격을 고려하여 추진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함.
 - 세제 개편에 따라 일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세액공제 방식을 사적연금제도에도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봄.
 - 또한, 2013년 세법 개편 내용에 따르면, 입구세제(보험료 납부 시 세제)와 출구세제(연금수령 시 세제)는 각각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이분화 된 형식을 취하게 되는데 제도의 일관성 측면에서 법적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재 추진 중인 세제 개편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면, 저소득층에게는 세제 개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고소득층에게는 세제 개편에 맞는 효과적인 연금상품 개발이 요구됨.
 - 현행 세제 개편은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로 개편되는 것이므로 저소득층이 공·사적 연금제도에 보다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유지하여 연금사각지대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변화된 세제에 맞게 금융기관의 효과적인 연금상품 개발이 요구됨.
 - 한편, 그 동안 금융기관에서 한계세율을 활용한 적격 개인연금 절세효과를 마케팅 하여 온 것을 고려하면, 이제는 한계세율 접근법이 아닌 실효세율 등 다른 접근법을 고려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임.

11) 1994년 개인연금 도입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공적연금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사적연금제도의 확립이 절실한 상황이었으나, 일시금 형태의 퇴직금제도만 보편화되어 있었음. 이에 국민연금과 퇴직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과 자신의 노후생활 설계에 맞는 추가적 소득보장을 위해 개인연금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세제 혜택을 통해 개인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됨(박상현·조준행(2000),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비교연구』, 국민연금연구센터, p. 39~40 참조).

■ 일시금보다 연금 형태로 수급하여 노후소득보장 기능에 충실하도록 추가적인 연금세제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류건식(2013)에 따르면, 퇴직연금 수령 시 선호형태를 분석한 결과, 일시금을 선호하는 비율이 77.1%로 나타나고, 2012년 기준 퇴직연금 수령현황을 보면 일시금 97.9%, 연금 2.1%로 나타나 퇴직자 대부분 일시금을 선호하고 또 수령해 가는 것으로 분석됨.
- 연령별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Catch-up Policy라는 제도를 통해 5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추가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은퇴 후 적정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례가 있으며, 영국과 아일랜드의 경우도 유사한 세제 혜택이 있음. [kiri](#)